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61호
2.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
3. 발의일자 : 2017. 2. 16.
4. 회부일자 : 2017. 2. 17.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2.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3.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안 제6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도 붙임)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2월 16일 박기열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61호로 발의되어 2017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오늘날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대안교육은 전통적·획일적 학교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중단 방지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의 대안교육은 교육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크게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되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학력이 인정되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서울다솜학교(공립, 다문화), 지구촌학교(사립, 다문화), 여명학교(사립, 새터민), 서울실용음악학교(사립, 실용음악) 등 4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비록 학교는 아니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일부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하는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39개 기관(2016년 9월 기준)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붙임]참조).¹⁾ 이 밖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1] 대안교육 기관 비교

구 분	개념	예산지원
인가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 ○ 학교 분류상 ‘각종학교’에 해당 	공립: 기본운영비 지원 사립: 운영비 미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육기관이나 민간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적을 일반학교에 두고 교육청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교육 	기관운영비, 학급운영비, 학생교육비 등 지원
미인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인성교육 등을 실시 ○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서울시 청소년정책팀에서 일부 지원 	교육청 지원 없음 (일부 기관은 서울에서 인건비, 급식비 지원 받음)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매년 서울시교육청의 공모에 의해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됨. 2016년도의 경우 당초 40개 기관이 지정되었으나 1개 기관이 중도에 지정취소 되었음.

[표-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내역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지원기관수	참여학생수				지원액
		초	중	고	합계	
2014	37	14	424	642	1,080	2,859,849
2015	38	23	421	699	1,143	3,120,298
2016	36	38	375	738	1,151	3,161,882

○ 한편 동 조례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들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칙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적용범위, 지원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과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3] 최근 3년간 서울시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초			중			고		
	총학생수	부적응 관련	비율 (%)	총학생수	부적응 관련	비율 (%)	총학생수	부적응 관련	비율 (%)
2013	469,215	369	0.08	304,251	1,245	0.41	333,705	4,058	1.22
2014	456,941	488	0.11	286,826	955	0.33	320,398	3,339	1.04
2015	450,422	446	0.10	263,466	744	0.29	308,306	2,879	0.93

[표-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개요²⁾

대상	정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학적	원 소속 학교
졸업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소속교의 졸업장 수여
출결 및 성적처리	위탁 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소속 학교에서 그대로 인정

2) 김미숙, 백성준, 옥준필, 「대안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12.31.), 33쪽

수탁 해제	생활지도상의 문제나 위탁학생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규정에 의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 심의와 재적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함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생은 소속 학교에 납부, 소속 학교에서는 추후 공문 절차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급
위탁 시기	월 2회(1일, 15일) 연중
교육 과정	보통교과는 최소화 운영하고, 2/3정도 이상은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운영
위탁 기간	통상 해당 학년까지이며, 재위탁 가능(위탁 기관장과 소속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
교육내용	보통교과 1/3이상, 대안교과 2/3 이내로 운영하며, 국어, 사회(국사포함)는 일반학교의 50/100 이상을 교육하여야 하고, 대안교과는 인성교육, 직업교육,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대안교육 등의 정의 및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동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규칙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의 경우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의견(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는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비 지원의 성격이 기관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위탁 학생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에 한정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7년도의 경우 경비지원의 범위를 “기관운영비와

학급운영비, 학생당 경비 등”으로 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설비, 기관운영비,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³⁾

- 한편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살펴 보면, 기관당 기관운영비 14,000천원, 학급당 학급운영비 18,580천원, 학생1인당 학생경비 1,600천원 및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의 형태로 13,000천원 등 총 36개 기관⁴⁾에 31억 4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상 “기관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의 경비가 지원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규칙이나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기준 내역(2017년)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기관 지원비(1기관당)		학급 지원비	소계 (A)	학생당 경비* (B)
	기관운영비	인건비보조금			
1학급 기준	14,500	15,000	20,000	49,500	-
2학급 기준	14,500	15,000	40,000	69,500	-
3학급 기준	14,500	15,000	60,000	89,500	-
4학급 기준	14,500	15,000	80,000	109,500	-

※ 기관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위탁일수, 학교 운영 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 학생당 경비*는 2016학년도 등록금에 준하여 위탁일수에 따른 등록금의 일할 계산분을 지급 - 2016년 1명당 연간 1,654,200원 기준

3)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의견(안 제5조제2항)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및 교무 업무 지원, 재적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절차 안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2017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참고.

4) 2016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40개 기관 중 타시도 위탁교육기관 4개(대전해맑음학교, 꿈자람대안학교, 인천한누리학교, 하늘빛대안학교)를 제외한 36개 기관 지원

[표-6] 대안교육지원센터 지원 업무 현황

구분	세부 업무
학생 및 학부모 지원	전문상담 제공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소개 및 위탁교육 절차 안내
재적학교 지원	위탁교육 절차 안내
	AEIS 교무업무 지원
	NEIS 교무업무(위탁학생) 지원
	원격지원(Helpcom)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교무·행정업무 지원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AEIS)을 통한 위탁서류 작성 방법 안내
	연수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홍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컨설팅 및 평가 지원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의 경우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보다 안정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현재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양적확대 및 학생과 학부모 상담의 증가 등 대안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전문상담사가 학생상담 지원 및 재적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인력확충 및 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201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2016.9.20.)

연번	학교급	학교명	학급수	정원	운영기관	소재지	특화프로그램	대상	비고
1	고	꿈타래학교	4	60	서울산업정보학교	관악구	프로젝트 학습		[공립]
2		고드림학교	1	20	시립중앙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상당,바리스타,목공예		
3		꿈더하기학교	1	20	꿈더하기지원센터	영등포구	바리스타, 상담	발달장애 고1~2학년	
4		꿈에학교	1	20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강남구	인성, 진로탐색, 캠프		
5		도시속작은학교	1	20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대문구	인턴십, 상담, 여행		
6		동그라미학교	1	20	서울청소년수련관	중구	제과제빵, 바리스타		
7		동부나우리학교(고)	1	20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심리상담, 치료공동체	시립동부아동센터 입소학생	
8		링컨학교	3	60	(사)국제청소년연합	중랑구	영어, 음악, 인성지도		
9		비전학교	1	20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마포구	프로젝트, 진로직업		
10		성지재능학교	2	40	성지중고등학교	강서구	실용음악, 직업체험, 컴퓨터자격증	고2~3학년	
11		세움학교	1	20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송파구	바리스타, 제과제빵, 악기수업		
12		숲속작은학교	1	20	(사)세계시민학교	마포구	무예, 바리스타		
13		신도림미용학교	4	80	신도림미용고등학교	구로구	헤어,메이크업,네일		
14		에인미용예술학교	2	40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강서구	헤어,메이크업,네일		
15		오름학교	2	40	손과발	서초구	유지컬, 음악미술치료		
16		참빛기독학교	1	20	해성교회	강동구	미술치료, 악기, 바리스타		
17		참좋은학교	1	20	(사)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진로체험, 실용음악		
18		청소년희망학교	2	40	(재)청소년희망재단	성북구	일본어, 체험활동		
19		한국연예예술학교	2	40	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	서초구	연기, 보컬, 유지컬		
20	중·고	나래대안학교	2	3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애란원	서대문구	부모교육, 사진·영상교육	미혼모	
21		나우학교	2	40	노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원구	생활훈련, 진로체험		
22		마음사랑학교	2	40	(사)키움과채움	동대문구	정서회복, 공동체, 제과제빵	소아청소년 정신과,기속형	
23		성모마음행복학교	3	60	(사)성모마음	중랑구	예술치유, 마음공부	소아청소년 정신과,기속형	
24		예쁨예술학교	2	40	(사)DTS행복들고나	노원구	예술특화, 회복프로그램	경계성지능 청소년	
25		치유학교생	3	55	(사)미래와공감	도봉구	감정조절훈련, 심리치료	소아청소년 정신과,기속형	
26	중	미래학교	2	40	한산중학교	강동구	상담, 진로프로젝트		[공립]
27		다애다문화학교	2	40	(사)한베문화교류센터	강남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진로직업교육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28		더하기학교	1	20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성동구	인성, 진로역량 강화		
29		동부나우리학교(중)	3	60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기속형, 천연비누, 악기수업	시립동부아동센터 입소학생	
30		여명학교	1	20	(사)여명	중구	한국어,치유교과	탈북학생	
31		통통학교	1	20	구로청소년문화의집	구로구	예술,진로,회복프로그램		
32		티브터학교	2	40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진로, 치유인성교육		
33	초·중	지구촌학교	2	40	(사)지구촌사랑나눔	구로구	인성교육, 언어교육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34	초	두리하나국제학교	1	20	(사)두리하나	서초구	기속형, 기초한글	탈북학생	
35	초중고	사람사랑나눔학교	4	80	청소년과사람사랑	영등포구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학습	경계선급,발 달장애	
36	중·고	대전해맑음학교	2	40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전시	예술, 회복프로그램	학교폭력피해	타시도
37		꿈자람대안학교	2	4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무주군	치유,상담 및 진로탐색	인터넷중독	타시도
38	초중고	인천한누리학교	3	60	인천한누리학교	인천시	기속형,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타시도
39		하늘빛대안학교	6	12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용인시	상담·치료,공동체활동	정서행동 장애	타시도
계		39기관	78	1,525					

관 계 법 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慮)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